

담배소매인 행정처분(지정취소)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, 동법 제22조의3(청문)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,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8일

파 주 시



1. 공고기간 : 2026. 5. 8. ~ 2026. 5. 22.(금)
2.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처분내용 : 담배소매인 지정취소
4. 처분사유
 -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,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
 -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.
5. 법적근거 :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, 제7호
6. 청문 및 의견제출
 - 청문일시 : **2026. 6. 5.(금) 10:00**
 - 청문장소 : 파주시청 민원동 회의실 (민원동 2층)
 - 청문주재자 : 금촌1동 생활민원팀장
 - 의견진술방법 : 서면 또는 구술(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)

7. 대 상 자

상호	대표자	영업소 위치	예정처분	청문일시	처분근거
이마트24 운정더지음점	박*현	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33-21, 1층 111호, 더지음스퀘어 (동패동)	지정취소	2026.6.5. 10:00	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6호, 제7호

8. 기타사항

- 가. 「담배사업법」제16조제2항제1호마목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나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나 「행정소송법」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.
- 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민생경제과(☎031-940-45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